

디지털 무역협정의 예외 조항 및 사례 연구: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of and Exceptions to Digital Trade Agreements

김진규** Jin-Kyu Kim

김동영*** Dong-Young Kim

목 차	
I. 서론	IV. 주요 쟁점 분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WTO와 디지털 무역협정의 예외 조항 및 사례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디지털 무역의 핵심 주제인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은 주요 통상국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WTO 주요 협정의 공공정책과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의 개요 및 쟁점 분석을 통하여 WTO 다자간 규범을 중심으로 국제통상환경에 적합한 무역 규범화의 올바른 방향 및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디지털 무역협정, 무역 자유화, 일반 예외 조항,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WTO

* 이 논문은 2023년도 한국무역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주저자), E-mail: jk.kim@chosun.ac.kr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강사(교신저자), E-mail: ddesigner77@gmail.com

I. 서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역내 및 국경 간 디지털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제품 및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된 정보는 국가 및 개인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협정에서 국경 간 정보 전송에 관한 규범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재민(2020)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교역에 관한 논의는 WTO 차원의 다자간 논의, 지역무역협정의 장(Chapter)의 일부로서 양자 또는 지역적인 논의 및 디지털 교역만을 다루는 독립적인 디지털 무역협정 등 다양한 형식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주형(2019)은 디지털 무역 규범 내 예외적 조치 규정으로 국내 규제 권한을 확보하려는 디지털 무역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하여 인터넷 주권을 강조하는 EU, 중국뿐 아니라 미국도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자국 기술의 탈취 방지를 위한 사이버안보 등 국내 규제를 위한 정책적 공간(policy space)을 제공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주요 교역국이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을 살펴보면, WTO의 기술 중립성 원칙과 TBT의 정당한 목표(Legitimate Objective)라는 예외 개념을 원용한 정당한 공공정책의 목표(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 'LPPO')라는 예외 조항이 디지털 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입국의 디지털 경제 수준에 따라 LPPO 달성을 위한 비합치 조치의 허용요건 완화를 선호하는 측과 디지털 무역의 법적 안정성 및 국가안보를 중시하여 데이터 현지화 조치의 금지를 통해 엄격한 허용요건 및 면책조항을 불허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앞선 연구에서는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 및 촉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의 최소화 및 예측성이 가능한 법적인 확실성 제고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정립에 관한 필요성에 관한 연구가 다수 있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의 핵심 주제인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대상으로 WTO의 정당한 목표의 개념 및 분쟁사례, 그리고 주요 통상국이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조항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WTO의 관련 분쟁사례 및 주요 교역국의 디지털 무역협정 간 일반 예외 조항의 문헌을 고찰하여 최근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예외 조항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였다. 향후 우리나라가 미국, EU, 중국, 일본 등 거대 디지털 교역 국가와의 디지털 무역 협상 시 바람직한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디지털 무역의 개요

디지털 무역의 개념에 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규범 등에서 명확히 정의된 바는

없다. 미국 의회 조사국(2020)에 따르면, 디지털 무역이란 “인터넷과 인터넷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주문, 생산 및 제공하는 상거래 및 무역”으로 정의한다. López González, J. and M. Jouanjean (2017)은 “디지털 무역은 물품, 서비스 및 정보 등을 거래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에서 디지털 주문, 생산 및 전달이 이루어지는 속성을 갖는다”라고 주장하였다. 디지털 무역의 거래 대상과 범위 역시 국제적으로 정의된 사항이 없으나, 2023년 1월 14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싱가포르 DPA’)¹⁾에 따르면,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며,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또는 그 밖에 제품”²⁾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무역의 거래 대상인 디지털 제품을 전통적 무역의 상품으로 볼 것인지, 서비스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한 지속적인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령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수출(수입)을 “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또는 처리한 자료(정보) 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반출(반입) 후 인도(인수)하는 것”³⁾이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2023)는 컴퓨터 또는 시청각 서비스와 같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digitally delivered services)에 관하여 상업 서비스(other commercial services) 분야로 구분하여 무역 통계를 계상하고 있다. 디지털 제품의 성격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따라 WTO 전자상거래에 관한 통상규범의 적용이 GATT 또는 GATS 등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개념적 정의가 갖는 정치적, 규제적 함의는 크다. 이한영(2007)은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를 갖추지 못한 GATT와 GATS의 규범적 한계성도 있지만, GATT와 GATS의 차이는 일반적인 의무(general obligations)의 범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GATT의 일반 원칙은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및 정량적 제한 조치 금지 등이 포함되는 반면, GATS에서는 최혜국대우만이 일반적 의무에 해당한다. GATS는 시장개방 협상을 통해 회원국들이 내국민대우 및 정량적 제한 조치와 관련된 의무 부담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것은 GATT에 비해 GATS가 회원국의 자국 시장에서의 정책 재량권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열어 두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디지털 제품의 분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데이터의 국경 간 정보 이전 자유화를 추구하는 회원국과 그에 대한 규제 권한의 유지를 희망하는 회원국 간의 견해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디지털 제품의 무역을 규율하는 통상법 규범이 달라지면 디지털 제품의 무역 자유화 정도가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WTO 회원국들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통상규범의 도출보다는 지역무역협정 또는 디지털 무역 협정을 통하여 실용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제품의 분류에 접근하고 있다(곽동철 · 안동근, 2016).

1) 한-싱가포르 DPA 발효로 기존의 한-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 1(디지털 경제)로 대체되며, 기존 4개 조항에 불과한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총 34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되어, 양국 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2) 한-싱가포르 DPA 제14.1조.

3)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다목, 동 시행령 제4조, 동 관리 규정 제4조 및 제5조.

2.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의 개념

디지털 교역의 근간을 구성하는 것은 디지털화된 데이터 및 정보이다. 이재민(2020)은 디지털 무역에서 전자적 방식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전송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국가 간 근본적인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정보의 해외 전송의 자유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 국가에서 취합한 정보를 저장하는 설비를 그 정보를 취합한 국가의 영역 내 보관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인가이다. 이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는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저장설비 국내 위치 요건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각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이를 규제할 수 있다는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디지털 무역협정의 데이터 규범 조항

조항	내용	예외
국경 간 정보 전송	사업 수행을 위한 전자적 방법에 따른 국경 간 정보 전송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음	대다수의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LPPO)를 달성하기 위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데이터 현지화 및 컴퓨터 설비 위치	사업 수행을 위한 조건으로 당사국 영역 내 컴퓨터 설비 사용 또는 위치시킬 것을 요구할 수 없음	

Gifis(1996)는 공공정책(public policy)이란 공익(public interest)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며 사회 전체에 최선인 것으로서, 공익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정의하였다. 즉, 공익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 또는 정부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인 이익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공공정책에 어긋난다는 것은 특정 행위 또는 행동 방침이 사회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Cochran and Malone(2005)는 공공정책은 희소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구성되며, 사회 구성원과 그들에게 필요한 가치 및 선택으로 보았다. TBT 협정은 정당한 목표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개념에 관한 명시적 정의는 부재하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는 U.S.-Tuna II 사건에서 TBT 협정의 정당한 목표를 정의에 관하여 “정당함이란 합법적이고(lawful), 옳은 것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justificable), 적절한(proper) 것”으로 판시하였다.⁴⁾ 즉, 정당한 공공정책의 목표는 합법적이며, 옳은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공공이익의 최선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의미한다.

4) TRIPS 제30조(DS reports)와 관련하여 WTO Analytical Index는 ‘legitimate’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The word ‘legitimate’ is commonly defined as follows: (a) Conformable to, sanctioned or authorized by, law or principle: lawful; justifiable; proper; (b) Normal, regular, conformable to a recognized standard type.

3. 일반 예외 규정의 현황과 체계

국경 간 데이터의 전송 자유화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보편적이고 통일된 디지털 통상 모델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2017년 이후 WTO에서는 주요 회원국 60개국이 참가하여 전통적인 총의(consensus) 방식이 아닌 복수국 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PTAs')에서 전자상거래 분야에 관하여 공동성명 구상(Joint Statement Initiatives, 'JSI') 형태로 논의해왔다. 그러나, 인도 및 남아공 등 일부 회원국이 디지털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JSI 협상 방식은 WTO의 절차적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의제는 다자간 협상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JSI 방식을 통한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WTO는 GATT 제20조에서 일반 예외 규정 및 GATS 제14조의 일반 예외 조항을 통해 정당한 목표에 근거한 회원국들의 자국 내 규제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즉, 회원국이 WTO 규범을 위반하는 예외적 규제를 초치하더라도 협정의 일반 예외 규정에서 명시한 정당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음을 입증한다면, 해당 조치는 합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일반 예외 규정의 남용 방지를 위해 그 조치가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로서 인정되거나 무역 제한 효과를 지닌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

Ⅲ. WTO와 디지털 무역협정의 예외 조항 및 사례

1. WTO 협정의 예외 조항 및 사례

1) GATT 일반 예외 규정과 분쟁사례

(1) GATT 일반 예외 조항

WTO 규범상 예외적으로 규제 조치를 허용하는 GATT 일반 예외(general exceptions) 조항은 공공도덕의 보호, 인간과 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 등 예외적 허용범위를 필요성 요건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여건에 놓인 국가에 대해 자의적,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 무역의 위장된 제한을 규제하기 위해 두문(chapeau)에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⁵⁾ 유형정, 조현진(2014)은 이러한 요건은 사건마다 판단 범위가 달라지고 그 적용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GATT 제20조는 2단계 심사구조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는 GATT 제20조의 (a) 항부터 (j) 항까지의 조항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되어야 하고, 2단계는 해당 조치가 두문 요건을 충족하면, 그 조치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예외적

5) GATT 제20조.

조치로 간주한다.

(2) 중국의 출판물 및 시청각 제품 분쟁 사건⁶⁾

본 사건은 미국산 일부 출판물, 시청각 제품 등의 레코딩 수입 및 유통 서비스에 관하여 중국 측 규제 조치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분쟁으로 디지털 무역에서 GATT 제20조의 (a) 공공도덕의 보호 예외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이다. 중국은 GATT 일반 예외 규정을 적용한 규제 조치가 자국 내 공공도덕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패널보고서에서 인정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해당 조치와 비교하여 무역 제한의 효과가 작으면서 동일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대안 조치가 있는지를 판정할 필요성 여부를 충족하지 못해 중국의 규제 조치에 관한 정당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실패하였다.

2) GATS 일반 예외 규정과 분쟁사례

(1) GATS 일반 예외 규정

GATS는 앞서 언급한 정당한 목표(*legitimate objective*)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 예외 조항에서 다루고 있다. 즉, 디지털 무역에서 인용된 GATS 예외 조항은 공공도덕 보호, 공공질서 유지 목적 및 법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⁷⁾ GATS는 GATT와는 달리 근본적인 사회 이익(*a 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법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하위 조항을 두어 제한적 범위에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미국의 온라인 도박 서비스 분쟁 사건⁸⁾

본 사건은 안티구아(Antigua and Barbuda)가 미국에 제공한 온라인 도박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사건으로 서비스의 온라인 국경 간 거래에 관하여 처음 다룬 분쟁 사건이다. WTO 분쟁 상소기구에 따르면 미국의 국경 간 온라인 도박 서비스 공급을 금지한 조치는 GATS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시장접근 양허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GATS 제14조의 일반 예외 조항 중 (a) 조항을 인용하여 공공도덕 및 공공질서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상소기구는 미국 연방법상 여행법, 전신법 및 불법도박 영업법과 미국 측의 공공도덕 및 공공질서 보호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심리한 결과,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반면, 안티구아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대안 조치를 제시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GATS 제14조 (a)를 근거로 미국의

6) China - 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WT/DS363).

7) GATS 제14조 (a) 및 (c).

8)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 Communication from Antigua and Barbuda (WT/DS285).

해당 서비스 수입금지 조치는 WTO 규범에 합치하는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3) TBT 일반 예외 규정과 분쟁사례

(1) TBT 일반 예외 규정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정당한 목표(legitimate objective)’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늘날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에 관한 조항의 해석 및 적용을 위한 근거가 되고 있다. TBT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국의 정당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 이상의 무역 제한을 취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⁹⁾ 즉, 기술 규정에 관한 불필요한 무역 제한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는 체약국이 정당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취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비롯한 것이다. 하지만, 동 협정의 조항은 정당성에 대한 명시적 정의 규정이 부재하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목표에 관한 예시조항으로 국가안보 요건, 기만적 관행 방지, 보건,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 보호를 열거하여 예시하고 있다. 정당함이 요구되는 대상은 해당 조치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조치의 무역 제한 필요성과 대안적 조치를 비교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당한 목표는 회원국의 기본적인 권리와 원칙으로서 정당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조치에 실질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미국의 육류상품에 대한 원산지 라벨링 분쟁 사건¹⁰⁾

본 사건은 2009년 1월 미국 농무부 유통국(USDA)이 수입 육류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의무사항을 발표한 미국의 원산지 라벨 표시(Mandatory Country of Origin Labelling, ‘COOL’) 조치가 ① WTO TBT 협정 2.1(내국민대우)을 위반한 외국산 가축에 대해 차별적 조치 및 ②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무역 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 여부가 쟁점 사항이다. WTO 분쟁조정 패널에 따르면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가 내국민대우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산 가축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하였고,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무역 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원산지 표시제가 WTO TBT 협정 위반이라는 WTO 분쟁조정 패널 판정에 대하여 미국의 COOL 조치와 TBT 협정 제2.2조와의 합치성 여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근거로 정당한 목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 규정이 정당한 목표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WTO 상소기구에 상고하였다. 상소기구는 TBT 제2.2조가 정당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역 제한적인 대안 측

9) TBT 협정 제2.2조.

10) United States — Certain 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 Requirements (DS384, DS386).

정치와 비교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해당 조치가 정책 목표에 대한 기여도나 수준은 기술 규정의 도입 및 이행 과정에서 판단되는 것이며, 기술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 형식 구조 및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상소기구의 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가 캐나다 및 멕시코산 가축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둘째, 미국의 조치가 정당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인지를 검토의 필요성, 심사의 과정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제안한 대안 조치와 미국의 조치를 비교하며 대안 조치의 이용가능성, 무역 제한성 및 해당 조치와 같은 수준의 목적 달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패널은 관련 자료 부족을 이유로 사실관계에 관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안적 조치가 미국이 추구하는 목적을 해당 조치만큼 달성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당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판정은 기각하였다. 상기 사건은 TBT 협정 제2.2조의 ‘수행’이란 쟁점 기술 규정이 정당한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 정도를 검토하여야 함을 의미하여, 이러한 상소기구의 판정은 TBT 제2.2조의 해석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3) 미국의 참치 제품에 대한 수입, 유통, 판매 조치에 관한 분쟁¹¹⁾

미국은 참치 조업 과정에서 특정한 어획 방법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돌고래의 사망 또는 부상을 줄이기 위해 참치와 그 제품 그리고 관련 국내시장을 규제해왔다. 미국의 시장규제 조치는 참치 제품에 표시하는 미국 공식규격의 돌고래 안전 라벨 표시 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참치의 원산지에 관하여 참치를 어획한 선박 국적과 상관없이 라벨 요건을 같이 적용하고 있다. 멕시코 등은 미국 측의 해당 라벨 요건은 참치가 어획된 해양 지역과 참치 조업 방식에 따라 다른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어 동종상품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분쟁 사안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사건에서 정당함이란 용어를 ‘합법적이고, 옳은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U.S.-Tuna II(Mexico) 분쟁에서 상소기구는 TBT 협정의 필요성 요건은 정당한 목표의 존재 여부 및 해당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의 실질적 기여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상소기구는 기여도에 관하여 해당 조치의 무역 제한 정도와 해당 조치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는 캐나다 및 멕시코가 제안한 대안 조치에 관하여 무역 제한성, 목표와 기여도의 동등성 여부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동 분쟁에서 제소국이 제안한 라벨링 표시 조치는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당한 목표와 동등한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국 측의 라벨링 조치는 TBT 협정 제2.2조에 합치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상소기구는 TBT 협정의 기술 규정의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여 돌고래의 보존이 목적이므로 TBT

11) United States —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WT/DS381).

제2.2조에 관한 정당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시장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라벨링 제도에 관한 정당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본 사건은 돌고래 보호를 위한 미국의 돌고래 안전 라벨 조치에 관하여 제소국인 멕시코는 TBT 협정 기술 규정 중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근거로 WTO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WTO 분쟁 해결위원회 패널과 상소기구는 TBT 협정의 기술 규정이라는 정책 수단은 객관적인 대상일 뿐이며 그 합법성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상기 조항의 해석원칙과 기준 확립을 위한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4) 소결 및 시사점

앞서 설명한 WTO 분쟁사례는 GATT, GATS 및 TBT의 일반 예외 규정에서 명시한 정당한 목표 달성 조치 중 디지털 무역과 관련성이 높은 정당한 정책적 목표는 공공도덕의 보호라는 점이다. 특히, WTO 분쟁해결기구는 U.S.-Gambling 및 China-Publications and Audiovisual Products 사건에서 상대국의 자국 내 공공도덕의 보호를 위한 규제 조치가 정당한 목표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조치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WTO에서 회원국의 정책적 규제 권한에 대해 허용하는 일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공공도덕의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에는 모두 인정하는 반면 '필요성'심사는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 GATT와 GATS의 일반 예외 규정이 완전히 같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GATT 제20조 (a) 예외는 공공도덕의 보호만을 명시하고 있지만, GATS 제14조 (a)는 공공도덕 및 공공질서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GATS 예외 조항은 GATT와 달리 공공질서 유지라는 정책적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치의 정당화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포괄적이다. 이러한 평가는 GATS의 점진적 자유화는 협정의 성격에서 기인한다. 반면, TBT는 GATT 일반 예외의 두문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정당한 목표의 적용을 위한 필요성 요건을 적용받는다. 권현호(2022)의 연구에 따르면 TBT는 기술 및 정당한 목표에 관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다른 협정과 달리 디지털 무역에 적용 요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WTO를 통한 디지털 통상규범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시장개방의 유보 조치와 새로운 디지털 무역 규범 간의 법적 관계에 관한 우선 적용 순위의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디지털 무역 규범의 발전에 따른 국내 제도의 현행화 및 분쟁 예방에 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2.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예외 규정

1) 개요

디지털 무역협정의 주요 논제는 첫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 둘째, 디지털 상거래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한 규정 및 셋째, 디지털 무역장벽의 완화를 통해 디지털

털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규정 정립이다. 디지털 무역 분야는 거래 대상의 특성상 첨단기술 분야와 연관성이 있고, 국가 기반 시설을 구성하는 통신, 금융, 운송 등 주요 산업과도 연계되어 있어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디지털 정보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미래 산업과 통상질서의 주도권 확보하고자 하는 주요 선진 통상 국가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민감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자유화의 핵심적인 요인은 디지털 무역장벽의 완화에 기여하는 규정이며,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와 같은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의 자유화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설비의 현지화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CPTPP, USMCA, RCEP은 위에서 언급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거래와 관련된 핵심 규정을 의무조항으로써 도입하면서,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관하여 일반 예외와 안보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 무역협정은 개인정보의 국경 간 거래 및 이전과 관련한 의무조항에 예외 조항으로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국내 규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자유화 및 데이터 설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 의무 범위를 축소하는 국내 규제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이효영, 2021).

2) 주요 디지털 무역협정의 LPPO 예외 조항

(1) CPTPP, DEPA 및 DEA 예외 조항

CPTPP, DEPA, DEA는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의 예외를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 및 데이터 설비의 현지화 조항 등에만 적용하도록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여 도입하는데, LPPO 범위를 제한하는 필요성 요건 규정은 없고, 두문 요건을 병행 도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체약국이 추가적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및 데이터 설비 현지화 요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과도한 데이터 거래 제한 금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¹²⁾ 예컨대, CPTPP의 경우 LPPO 예외로 인정되는 조치는 자의적,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적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것보다 더 큰 정보 전송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투자 및 금융서비스가 전자적으로 제공 또는 수행되는 경우 동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범위 제한도 존재하고 있다.¹³⁾ LPPO 예외 규정은 이들 협정에서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 의무조항과 데이터 설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 의무조항에 모두 적용되도록 명시되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권한 확대 및 데이터 거래를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적정한 수준의 규제 권한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였다.

12) CPTPP 제14.11조 및 제14.13조; DEPA 제4.3조 및 제4.4조; DEA 제23조 및 제24조.

13) CPTPP 제14.2조 4항 및 5항.

(2) USMCA와 USJDTA 예외 조항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과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USJDTA’)은 협정 내에서 일반 예외와 안보 예외 조항을 규범화하였다. 특히, 이들 협정은 LPPO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 및 두문 요건, 그리고 데이터의 전송 제한 금지 요건을 모두 도입하여 LPPO 예외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⁴⁾ 특히, USMCA 경우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자유화 의무조항에는 LPPO 예외 규정을 허용했지만, 데이터 설비의 현지화 조항에는 LPPO 예외 규정이 삭제되었다.¹⁵⁾ 즉 데이터 설비의 현지화에 대해서는 협정 참여국의 국내 규제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정책이 반영되었다고 평가된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규정도 필요성 원칙과 함께 위험 수준에 비례하여 정보 보호법 제도를 제정하는 비례성 원칙(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들 협정은 LPPO 예외 조항의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여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적 요구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3) RCEP 예외 조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지역무역협정 제12장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에서 디지털 무역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정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예외와 안보 예외 조항 형식을 갖추고 있다. RCEP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증진을 위해 컴퓨터 설비의 위치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에 관하여 규범화하였으며, 해당 조항에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조치 및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¹⁶⁾ 첫째, RCEP은 LPPO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필요성 요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치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였다. 둘째, RCEP은 LPPO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필요성 요건의 문구를 ‘필요하다고 간주하는(considers necessary)’이라는 문구로 변형 도입하여 기존의 필요성 요건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였다(이효영, 2021). 또한, 두문 요건조항 내 각주(footnote)를 통해 필요성에 관한 판단 및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에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여, 체약국의 국내 규제 권한을 더욱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에 관하여 보호적·제한적으로 규제하려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에 소극적인 일부 국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14) USMCA 제19.11조.

15) USMCA 제19.12조.

16) RCEP 제12.14조 제3항 (a) 및 제12.15조 제3항 (a).

IV. 주요 쟁점 분석

1. 디지털 무역협정의 규범의 복잡성

주요 디지털 무역협정의 LPPO의 예외 규정을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무역의 핵심 규범인 컴퓨터 설비의 현지화와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정보의 국경 간 전송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규정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Bacchus(2021)는 디지털 무역의 특성상 정보의 국경 간 이전 및 거래로 인한 효율도 있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국가안보 문제, 기술 경쟁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각국 정부 차원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내 규제 및 정책에 관한 권한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디지털 무역에 있어 정당한 공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규제 권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규제 범위와 정도에 있어 회원국 간 서로 다른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통일화된 다자간 규범 형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17년 12월, 제11차 각료회의에서 WTO 71개국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문(The Joint Statement on e-Commerce)을 통해 협상 개시를 선언 후, 2018년 3월 디지털 무역 분야의 다자간 통상규범 수립을 위한 탐색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첫째, LPPO 예외적 규정과 관련하여 주요 교역국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안은 미국, 일본 및 캐나다가 제안한 내용으로 USMCA와 USJDTA의 규범화 방식과 같다. 즉, 회원국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자의적 또는 부당 차별 및 위장된 무역 제한을 제한하는 두문 요건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제한을 금지하는 제약적 요건을 덧붙이고 있다. 두 번째 제안은 싱가포르에서 제안한 것으로 LPPO 예외에 '필요성 요건'을 생략하고 두문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CPTPP와 DEPA의 규범화 방식과 유사하지만, 과도한 데이터 거래 제한 금지 요건을 제거하여 자유로운 국경 간 정보 이전 등 자유화를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필요성 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두문 요건만을 적용하는 LPPO 예외 방식을 규정하도록 하여 RCEP 규범화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제안하였고, 국경 간 정보 이전에 관하여 국가의 핵심 안보 이익(essential security interests)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EU가 제안한 네 번째 제안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이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보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존 디지털 무역협정의 규범화 방식과는 차별화되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둘째, WTO 통합문서에서 일반 예외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대안적 문구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안은 GATT 제20조와 GATS 제14조를 모두 준용하고, 회원국들이 사이버안보 보장, 사이버공간의 주권 보호, 자국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 보호 및 기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조치를 추가로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두문 요건을 함께 명시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대안은 GATS 제14조의 두문 및 동조 (a)-(c)의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는 방식이다. 2020년 12월 전자무역의 원활화, 전자상거래의 개방, 전자상거래의 신뢰,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s), 통신, 시장접근 등 총 여섯 분야로 구성된 통합협상문서(The Consolidated Negotiating Text)가 작성되었다.¹⁷⁾ 통합협상문서는 여섯 개 분야 및 주요 디지털 무역협정의 다양한 예외 규정의 형태와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다자간 규범의 형성을 위해 디지털 무역협정의 다양한 규범 모델을 취합하고 WTO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규범화 양식으로 인해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의 모순은 지속적인 무역협정의 체결이 국가의 무역과 관련된 규정 제정의 중복성을 발생시켜 무역원활화의 목표가 손상된다(이영환, 2011).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화 원칙을 추구하는 규정은 협정 참여국들이 대부분 동의하지만, 의무 규정으로부터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에 관해서는 참여국 간 디지털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이해가 대립하여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결국 다양한 회원국 간 다자 규범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체결 과정을 참고하여 참여국의 경제 개발 수준에 맞는 협정상 의무와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단계적 다자화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이효영, 2021).

2. LPPO 예외 규정과 일반 예외 규정의 중복 적용

디지털 무역협정의 일반 예외 규정은 GATT 협정과 GATS 협정의 일반 예외 규정 및 GATS 제4조(일반 예외)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유미, 이길원(2020)은 디지털 무역협정의 일반 예외 규정의 규범화에 따라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PPO)’의 해석 범위 및 적용도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디지털 무역협정에서 GATT 제XX조 일반 예외가 아닌, GATS 제XIV조 일반 예외를 공통적으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교역 및 정보의 국경 간 이동으로 영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점진적 자유화를 추구하는 GATS 협정의 취지와 목적을 살피건대, 회원국들이 국내 규제 권한에 대한 허용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이희진 외, 2022). RCEP은 협정 참여국의 국내 규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폭넓게 확보하고자 GATS 일반 예외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DEPA는 GATT 제20조와 GATS 제14조를 일반 예외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CPTPP와 USMCA는 GATS 일반 예외 규정 중 일부만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디지털 무역 거래에서 일반 예외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무역협정에서 정보의 국경 간 전송 자유화 및 컴퓨터 설비의 현지화에 대한 LPPO 예외 규정은 정당한 정책 목표를 추구하려는 조치의 정당화에 관한 근거 규정을 의미하므로 GATT와 GATS 일반 예외 조항 내 예시 규정의 준용을 검토할 수 있다.

17) WTO Electronic Commerce Negotiations, Consolidated Negotiating Text - Revision (INF/ECOM/62/Rev.1), 14 December 2020 : 2022년 12월 22일 제3차 개정본이 발표됨(INF/ECOM/62/Rev.3).

다만, LPPO 예외 범위를 제한하는 요건이 협정 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USMCA는 GATS 제14조의 (a)~(c)를 일반 예외 규정의 범위로 채택하는 반면, USJDTA는 GATS 제14조의 (a)~(c)와 함께 GATT 제20조 일부 조항을 일반 예외의 준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LPPO의 예외를 많이 제한하는 협정들도 서로 다른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디지털 무역협정의 복잡하고 파편화된 규범화 방식은 스파게티 볼 현상을 유발하므로 WTO 일반 예외 조항의 준용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와 적용이 필요하다.

V. 결론

디지털 무역 규범은 WTO의 일반 예외 조항 및 공공 목표 개념을 기초로 디지털 무역에서 국경 간 정보 전송과 컴퓨터 현지화 설치 등에 관한 LPPO 개념 및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WTO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의 일반 예외 규정 및 분쟁 사례 조사를 통해 WTO 상소기구는 회원국들이 공공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규제 조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하였고, TBT는 정당한 목표를 조항으로 규정하여 회원국의 국내 규제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동 조항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TBT의 정당한 목표 조항과 GATT 및 GATS의 예외 조항의 공공도덕 보호, 공공질서 유지에 관하여 다른 판단기준과 허용범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디지털 무역협정의 규범화 작업에서는 일관적이고 통일된 규범 기준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무역협정은 범규범 체약국이 소수임에도 통상 선진국들 중심으로 LPPO 및 예외 규정을 협정 별로 다른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중복성 및 복잡성이 발생하여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 수준을 약화할 수 있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 무역 규범 간의 법적 관계 및 우선 적용순위의 명확화, 그리고 분쟁 해결에 관한 논의를 위한 현실적인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률적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 간 무역협정이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WTO의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절차 장을 준용하는 등 보편적인 원칙을 적용하되, 참여국 간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디지털 무역협정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WTO를 중심으로 다자간 통상 메커니즘의 복원과 함께 기존 규범의 활용과 디지털 무역 활동에 적합한 규범의 조화가 필요하다. 지난 30년간 확립된 통상규범을 활용하는 동시에 현재 디지털 무역의 새로운 상황을 고려한 무역자유화 원칙을 견지하고, 정보보호 및 안보에 관하여 예외 조항으로 LPPO를 도입하여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 원칙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범이 마련되어야 한다. WTO 다자간 협상을 통한 보편적인 통상규범의 제정은 현재 파편적인 디지털 무역협정의 규정을 보편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통상규범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무역 분쟁 발생 시 기존 협정의 법적 개념 및 판정 사례 등을 인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형태의 무역 활동에서 교역 당사자 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WTO의 다양한 회원국들이 자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상황에 맞추

어 세계 경제의 구성원으로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다자간 협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무역 시대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과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곽동철·안덕근(2016), “아날로그 체제하의 디지털 무역 - 디지털 무역 자유화와 무역협정의 역할”, 「통상법률」, 제131권, pp. 80-83.
- 권현호(2022), “디지털 무역과 국제통상 규범”, 「명지법학」, 제20권 제2호, pp. 43-54.
- “국제사회의 디지털 통상 정책의 변화”, 「월간 <통상>」, 2022. 11. 21, pp. 8-13.
- 김민정(2012), “<미국-멕시코 참치분쟁 II>에 대한 WTO 판결 분석”, 「국제경제법연구」, 제10권 제2호, pp. 118-120.
- 김진규(2023),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통상의 이해」, 광주: 조선대학교 출판부.
- 오선영(2016), “TBT 협정의 해석과 적용: ‘정당한 목표’의 고려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14권 제3호, pp. 95-96.
- 유형정·조현진(2014), “국가의 일방적인 환경 보호 관련 조치의 정당화 요건 - GATT 제20조 두문(Chapeau)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p. 212.
- 이영환(2011), “스파게티 볼 효과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pp. 238-240.
- 이재민(2020), “디지털 교역 시대의 아날로그 규범”,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2호, pp. 228-229.
- 이주형(2019),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과 예외 규정에 대한 소고”,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3호, p. 157.
- 이효영(2021),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LPPO)’ 예외의 의미와 쟁점”, 「국제경제법연구」, 제19권 제3호, pp. 203-204.
- 이희진·이주형·손승우·곽동철·곽주영·이효영·오준석·허난이·김동휴·엄도영·주한나(2021),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서울: 한국표준협회.
- 조유미, 이길원(2020), “디지털 무역 협정상 일반적 예외 규정에 관한 고찰”, 「아주법학」, 제14권 제2호, p. 237.
- 한국국제경제법학회(2022), 「신국제경제법(제4판)」, 서울: 박영사.
- Bacchus, J.(2021), *The Digital Decide: How to Agree on WTO Rules for Digital Trade*, Special Report,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 Bethlehem, D., McRae, D., Neufeld, R., Damme, V, I.(2009),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Law*(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 Bhagwati, J.(1995), “US Trade Policy: The Infatuation with FTAs”,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No. 726, pp. 4-5.

- Burri, M. and Polanco, R. (2019), “Digital Trade Provisions i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Introducing a New Datase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23 No. 1, pp. 5-14.
- Cochran, L. C., and Malone, F. E.(2005), *Public Policy: Perspectives and Choices* (3rd ed.), Colorado: Lynne Rienner, pp.13-24.
- European Communities-Trade Description of Sardines (EC-Sardines) (WT/DS231/R), (2002), Retrieved 23 October, 2002, from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WT/DS/231-8.pdf&Open=True>.
- Gifis, S. H.(1996), *Law Dictionary* (4th ed.), Texas: Barrons Educational Series Inc.
- González, L. J., Jouanjean, M. A.(2017), *Digital Trade: Developing a Framework for Analysis*, Paris: OECD Publishing.
- Ismail, Y.(2023), *The Evolving Context and Dynamics of the WTO Joint Initiative on E-commerce: The fifth-year stock-take and prospects for 2023*, Genev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UTS International.
- Pauwelyn, J.(2010), “Case Note: Squaring Free Trade in Culture with Chinese Censorship: The WTO Appellate Body Report on China-Audiovisuals”,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1, pp. 11-18.
- Sacha, W. V.(2006), “The Internet,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and the GATS: lessons from US-Gambling”, *World Trade Review*, Vol. 5 No. 3, p. 348.
- United States - Measures Affecting the Cross-Border Supply of Gambling and Betting Services (WT/DS285/AB/R) and the Panel report (WT/DS285/R), (2005), Retrieved 20 April, 2005, from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285_e.htm
- World Trade Statistical Review (2023), Retrieved 31 July, 2023, from https://www.wto.org/english/res_e/booksp_e/wtsr_2023_e.pdf
- WTO Electronic Commerce Negotiations- Consolidated Negotiating Text, (2020), Retrieved 16 June, 2023, from https://www.bilaterals.org/IMG/pdf/wto_plurilateral_ecommerce_draft_consolidated_text.pdf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of and Exceptions to Digital Trade Agreements

Jin-Kyu Kim
Dong-Young Kim

Abstract

The growing impact of cross-border movement of information is increasing interest in information policy through digital trade agreements in major trading countries. Major trading partners are calling for the inclusion of their digital policies in trade agreements to strengthen market dominance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and disputed settlement cases of the WTO's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examines the tendency of stakeholders to standardize legitimate exceptions to public policy objectives in digital trade. The study also examines the desirable direction of digital trade standardization suitable for the changing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There is still debate about the specific objectives that should be included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should be allowed to restrict trade, however this study finds that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on the need for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to be included in digital trade agreement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desirable direction of digital trade standardization i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need to protect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the need to liberalize digital trade. This balance will need to be adjusted as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continues to change.

〈Key Words〉 Digital Trade Agreements, Trade Facilitation, General Exceptions,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WTO